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22

발의연월일: 2020. 10. 23.

발 의 자 : 허종식 · 김교흥 · 김정호

어기구・유동수・정일영

이성만 • 윤관석 • 박찬대

이해식 • 이규민 • 홍기원

황운하 • 배진교 • 오기형

송영길·양기대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제도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며, 사업장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 에게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본인 몫으로 납부한 연금 대비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거나 아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용자의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

민연금은 사업장 체납 시 피해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납부책임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이에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95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 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u> 신 설>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
	<u>강</u> 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
	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
	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
	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
	료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심
	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
	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
	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
	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
	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

<u>는 아니 된다.</u>